

●환경부령 제115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2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 2.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4호의2서식 신고내용란 다음에 기상사업 등록증 분실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사업 등록증 분실 여부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분실함 [] 분실하지 않음
첨부서류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기상사업 등록증 분실 여부란에서 [] 분실함에 √ 표시를 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 3. 법인등록번호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대학(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수행 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총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구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사업비 (백만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합니다) 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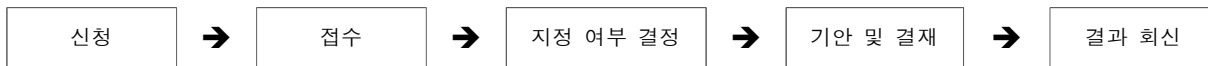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대학 중에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정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을 하려는 기상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기상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